부산항 야영장 이용요금 및 입장료 감면 할인대상

< 감면 대상 (100%) >

- 0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
- 0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- 0 [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] 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o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o 「5·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5·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0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| 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
- o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 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
- o 「부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원 조례」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
- 0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의 적용을 받는 한부모가족, 고아, 조손가족에 속하는 사람
- 0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북한이탈주민
- 0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
- 0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의사상자
 - ※ 단, 야영장 주차요금 5천원 별도 징수
 - ※ 위 감면 대상자는 야영장비 무료 대여 (사전 전화 예약 필요)

〈 할인 대상 (30%) >

- 0 주민등록상 이용일 현재 「부산광역시」에 주소를 둔 사람
 - ※ 2018.4.1. 이용객부터 적용되며 이미 입금하신 고객께서는 야영장 방문 시 별도 증빙문서(주민등록증 등)를 제출하시면 확인 후 감면드립니다)